

의안번호	2200635
의 퇴 인	이상희 의원
회 답 일	2024. 6. 27.
추 계 번호	24A1052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등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주변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함	의무규정
3	안 제9조(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0조(의료시설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1조(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에 공공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2조(이주대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3조(매수청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19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및 석유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취급량·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21조(환경상 영향 조사)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등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이하 “환경상 영향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11	안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근로자 및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이하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25조(환경오염 방지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진·방풍 등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적인 기본경비 내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자)	
3	안 제9조(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	
4	안 제10조(의료시설의 설치)	
5	안 제11조(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6	안 제12조(이주대책)	
7	안 제13조(매수청구)	
8	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9	안 제19조(유해화학물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질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10	안 제21조(환경상 영향 조사)	
11	안 제22조(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12	안 제25조(환경오염 방지 조치)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업이 시행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먼저, 제정안의 “노후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로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함”(안 제2조제1호)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은 “환경부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18조제1항)
 -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영향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건강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함(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8조제2항)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문화·환경·의료·복지 등에 대한 지원사업, 주변지역등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음(안 제8조제1항)
 - － 제정안의 개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주민의 건강지원(안 제9조), 의료시설의 설치(안 제10조), 주민 편의시설 설치(안 제11조), 이주대책 및 매수청구(안 제12조 및 제13조) 등이 있음

- 한편,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안 제21조)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안 제22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안 제25조)를 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함(안 제16조)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 및 주변영향지역이 확정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나, 제정안은 주변지역등의 지정·고시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의 노후 국가산업단지는 지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하는데 2024년 현재 28개 국가산업단지가 이에 해당함

[표 1] 국가산업단지 현황

구분	지역	국가산단	관리기관	착공연도	구분	지역	국가산단	관리기관	착공연도
1	서울, 인천	한국수출 산업	산단공	1965	25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단공	2014
2	부산	명지녹산	산단공	1990	26	전북	새만금지구	새만금개발청	2009
3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85	27	전남	여수	산단공	1967
4	대구	대구국가	산단공	2012	28	전남	대불국가	산단공	1989
5	인천	남동	산단공	1985	29	전남	광양	산단공	1984
6	광주	광주첨단 과학	산단공	1992	30	전남	삼일자원 비축	한국석유공사	1991
7	광주, 전남	빛그린	산단공	2014	31	전남	전주탄소 소재	-	2019
8	울산	울산·미포	산단공	1965	32	경북	구미(1단지)	산단공	1969
9	울산	온산	산단공	1975	33	경북	구미(2~4단지)	산단공	1977
10	경기	반월특수 지역	산단공	1977	34	경북	포항	산단공	1974
11	경기	파주탄현	산단공	1998	35	경북	포항블루밸리	산단공	2014
12	경기,	아산국가	산단공	1987	36	경북	구미하이	산단공	2012

구분	지역	국가산단	관리기관	착공연도	구분	지역	국가산단	관리기관	착공연도
	충남						테크밸리		
13	경기	동두천	산단공	2021	37	경북	월성원전	한수원	1978
14	경기	파주출판	입주기업 체협의회	1998	38	경남	안정	산단공	1999
15	강원	북평국가	산단공	1990	39	경남	창원	산단공	1974
16	충북	보은	충청북도	1987	40	경남	진해	산단공	1983
17	충북	오송생명 과학	산단공	2003	41	경남	밀양나노 융합	산단공	2018
18	충남	석문	산단공	2008	42	경남	경남항공	산단공	2018
19	충남	장항국가 생태산업 단지	산단공	2014	43	경남	지세포자 원비축	한국석유 공사	1981
20	충남	고정	한국중부 발전	1979	44	경남	옥포	경상남도	1974
21	충남	대죽자원 비축	한국석유 공사	1999	45	경남	죽도	경상남도	1974
22	전북	군산	산단공	1990	46	제주 도	제주첨단 과학기술	JDC	2005
23	전북	군산2	산단공	1993	47	제주 도	제주첨단 과학기술 2단지	JDC	2016
24	전북	익산	산단공	1973					

주: 음영은 착공 후 30년이 경과한 국가산단임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2023.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